

## [K-희망사다리] 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①

2025.04.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

PART. 1

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

2025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



+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1350

(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)

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



## ▲ 지원대상

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## ▲ 지원내용

##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※ (특례)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※ (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)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~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

- ▲ 지원시기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%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, 나머지 50%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 된 후 일괄 지급
- ▲ 신청방법·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
- ▲ **문의**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- ・고용24 누리집